예금자보호제도안내

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
■ 전국의 모든 신협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

신협 예금자보호제도는 특정 신협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○ **신협법을 통한 보호**

: 신협은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에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조성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
○ **신협중앙회란?**

: 신협중앙회는 "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"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신협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고, 신협과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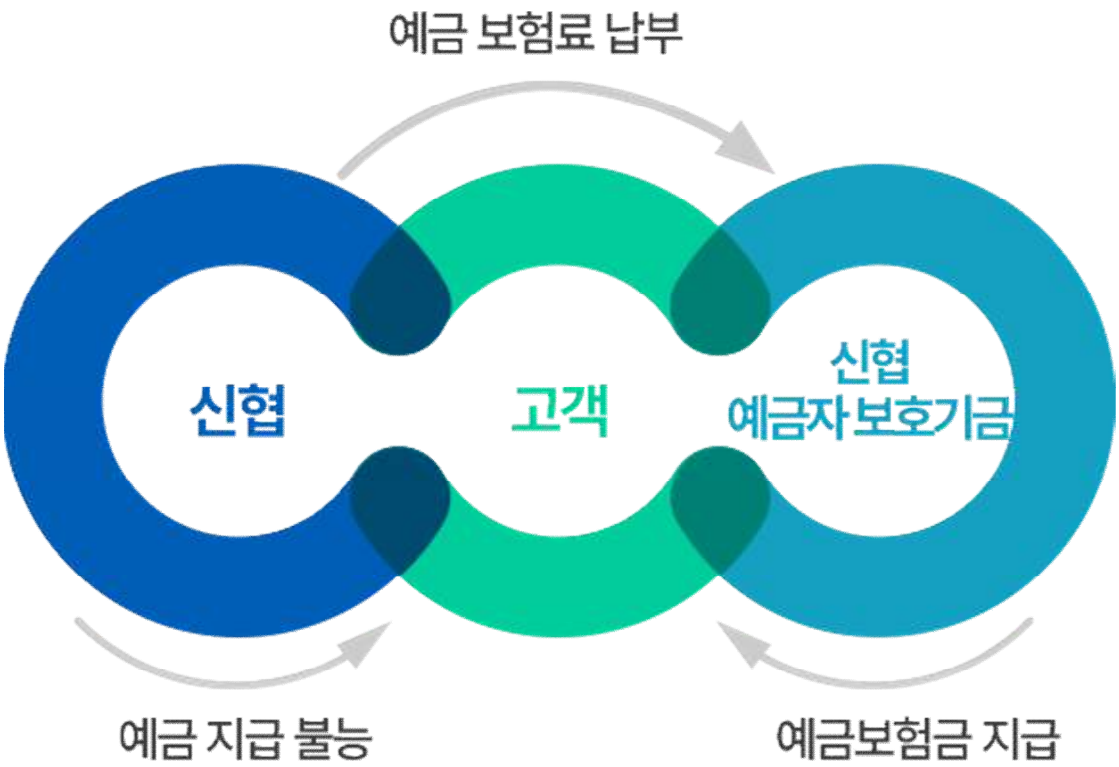

자주하는 질문(FAQ)

○ **Q.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?**

A.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○ **Q. 여러 신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?**

A. 신협은 각각 독립법인체로 운영됩니다. 따라서 신협별로 5천만원이 각각 모두 보호됩니다. 단, '갑'이 본점, '을'이 지점형태인 경우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법인체이므로 둘의 예적금을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드립니다.

○ **Q. 비조합원 및 법인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?**

A. 신비조합원 및 법인도 모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드립니다.

보호대상 금융상품

○ **고객이 예탁한 모든 예금 및 적금**

XX예탁금, OO적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신협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.

*일반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으로서 조합원자격 및 비과세 혜택 유지, 배당을 위한 필수 납입금입니다.

○ **보험금 지급 절차**



*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선 지급해드립니다.

1인당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해당 신협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예금자보호제도란?

-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.
-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,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신협이 파산할 경우,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*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(출자금은 제외)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*소정의 이자 :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(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금액

안전한 예금자보호 시스템

- 신협의 '예금자보호제도'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즉,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,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·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·운영되고 있습니다.

철저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

-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,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·감독과 과학적 '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'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
1인당 5천만원까지 완벽하게 보호

-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.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,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.
- 한편,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(상계)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신협 중앙회 바로가기(http://www.cu.co.kr/cu/cm/cntnts/cntntsView.do?mi=100091&cntntsId=1050)